

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목동실내빙상장은 국내 최초 국제규격의 빙상장으로 건립되어 빙상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, 국제대회 유치,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용의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, 목동실내빙상장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단체(서울시 체육회)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,
- 나. 2019년 6월말로 민간위탁 계약을 조기해지하고, 8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,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6567호에 따라 목동실내빙상장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※ 목동실내빙상장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

위탁기간	수탁기관	연간 위탁료(천원) ※평균	계약방법
1기 (3년) 1999.12.01. ~ 2002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467,000	수의계약
2기 (3년) 2003.01.01. ~ 2005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510,676	재계약
3기 (3년) 2006.01.01. ~ 2008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533,076	재계약
4기 (3년) 2009.01.01. ~ 2011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564,000	재계약
5기 (2년) 2012.01.01. ~ 2013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612,383	재계약
6기 (3년) 2014.01.01. ~ 2016.12.31.	(재)한국동계스포츠센터	1,072,325	재계약
7기 (2.5년) 2017.01.01. ~ 2019.06.30.	서울특별시체육회	716,257	공개모집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·운영 사무 위탁
- 위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
- 시설현황

시설명	준공일	경기장 면적	건축총면적	좌석수	최대 수용인원
목동실내빙상장	'89.10.31	6,018㎡	14,700㎡	5,000	7,000

- 위탁기간 : 3년 예정('19.7.01~'22.6.30)
- 위탁유형 : 수익창출형 위탁(시설 사용료 부과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·수탁협약 해지 검토 보고 (운영기획과 - 878호(2019.1.22.)
 - ※ 목동실내빙상장 관리·운영 위·수탁협약 조기 해지 요청(서울시체육화-292호 (2019.1.18)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(운영의 위탁)
- 「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 계획('19. 1. 30)
- '19. 4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적정, 조직담당관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목동실내빙상장은 빙상인구의 저변확대, 우수선수 육성, 시민체력증진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동계체육·문화공간으로,
-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라. 주요 위탁사무 : 목동실내빙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경기장 사용허가, 질서계도, 매·수표, 청소 등 운영 등
-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시설 관리·운영
- 시설·장비·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
- 목동실내빙상장과 관련된 기기운전
-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추진
-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수익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

제16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(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)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김전연 (☎2640-3807)